

제427회 국회
(임시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1일(월)

장 소 제3회 의장(245호)

의사일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 | | | |
|--|-------|---|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 | 2 |
|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 2 |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7월 21일 오늘 하루 동안 김상환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1차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 상견례하시고 인사말씀 나누셨는데요 그때 말씀 듣지 못했던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듣는 순서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간단한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해당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공직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이 그 이념과 규정에 맞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일상의 사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 그리고 재판관회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겸비하고 있는지는 물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염격하게 검증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느 때와 달리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6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헌법재판소장이 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그리고 역사적 사명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초점 맞춰 조명될 오늘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청문회 운영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내실 있고 충실히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하신 김상환 후보자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으로 적합한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 깊이 인식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진행도 제 책무이기도 합니다. 위원장의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6분)

○위원장 이재정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먼저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

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상환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후보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공직후보자 김상환

○**위원장 이재정**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서게 된 것은 저에게 과분한 영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부족한 저를 드러내어 헌법재판소장을 감당할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받는 청문회의 무게감으로 두렵고 멀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2024년 12월 27일 대법관의 소임을 마치고 퇴직할 때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법관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그동안 법관의 길을 걸어오면서 쌓아 온 경험과 생각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선배 법관들에게서 성실함과 겸허함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회적 경험의 부족한 점은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법정의 모든 주장을 정성을 다하여 경청하고 증거와 기록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숙고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줄곧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법관으로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툼의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과 변론을 듣고 각각의 의미와 무게를 저울질하며 판단하는 동안 실은 제 자신이 사람과 세상을 알고 배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내린 저의 판단이 당사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였는데 만일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법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의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함께 노력하였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 모든 이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겼고 그런 겸허함을 잊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법원을 떠나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4년은 두고두고 마음에 새길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법률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적용되어야 타당한지 문제 될 때 저는 기존 선례의 입장에 의문을 가져 보고 보다 깊이 고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법률의 정당성 여부를 연구·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헌법재판관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와 판단을 지켜보면서 저의 관념 속에만 자리 잡고 있었던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법원 밖에서 법원의 재판을 바라보던 동료 헌법연구관들과 논쟁하고 함께 고민하였던 경험은 법관의 재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제 나름의 헌법적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권을 비롯한 모든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의 존재를 물론 알고 있었지만 정작 법관인 저는 그동안 법정에서 늘 마주하였던 당사자가 바로 그 주권자인 국민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법원 재판의 헌법적 의미를 새김에 있어서도 대한민국헌법 제101조가 정한 사법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저의 시선이 주로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 제도가 마련된 것임을 보다 무겁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의 의미를 묻고 타당한 적용을 구하며 때로는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공간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법관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이 재판절차와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판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밝히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법관의 소임을 마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 일하면서 그러한 교훈과 관점을 모든 재판 과정에서 구현하였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여하였던 판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비판적 관점의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엄격하지만 넓고 따뜻한 헌법의 시선으로 재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으려 하였고 법정에서의 절실한 호소를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귀담아듣고 최종 판단에 이른 이유와 사정을 소상히 밝히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점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서로 관할을 달리하며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재판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저는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삶 모든 곳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과 저의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하나마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습니다.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외부 사정에 혼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하였고 규정 하나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떠올리면서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하여 헌법을 이해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히고 개방된 시각으로 헌법을 바라보겠습니다. 헌법 정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미래세대 역시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 명의 헌법재판관인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장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살피고 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조언과 질책을 가슴에 새겨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재정 예, 의사진행발언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2018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캡투자 문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통 집을 사면 한 아파트에 오래 사는데 굉장히 자주 옮겨 다니시고, 투자의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유심히 봤는데……

○위원장 이재정 저를 향해서 해 주시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이재정 질의가 되지 않도록.

○조배숙 위원 이 부분이 클리어되지 않았어요.

2005년도에 반포주공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했거든요. 사실 이게 재산 형성 과정이 좀 불투명한데 장인·장모로부터 2억을 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가, 속기록에는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면 송금을 했다든지 그러면 은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용증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내역이랄까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정 이미 요청한 자료인데 아직 받지 못하신 건가요?

○조배숙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정 지금 요청하시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예, 새로 요청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좀 놓쳐서 그런데, 후보자님이 되게 원칙주의자이신 것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출입증을 너무 정면에 이렇게 걸고 계셔 가지고 사실은 그냥 주머니에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재정 아주 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이셨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까 선서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출입증을 아래쪽으로 해 주시거나 주머니에 잠시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공적인 시간을 위원님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최소한의 시간을 한정해서 약속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는 통상 국회에서 국무위원분들이나 또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분들이 답변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튼 이 질의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각자 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만 던지시더라도, 답변할 시간을 주지 못하시더라도 그것은 위원님이 국민께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 판단을 스스로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는 7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답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유동적으로 드립니다. 시간을 넘어선 위원님들 발언은 제가 허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후보자님께서 충분히 답변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직접 말씀 주시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에 이렇게 내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 출신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다 법조인분들이 이 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속에서 나름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역사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은 기관인지, 그것을 맡아서 역할 하실 소장님의 임무는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오기 전에 이 책을 좀 읽어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그런데 부제가 ‘불의에 맞선 칼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의 산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12·3 내란 있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정말 헌법재판소가 해 왔던 일들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처음 탄생되고 나서 내용을 보니까 을지로에 있는 정동빌딩 16층에, 옛 날 작은 건물에 소장님 방만 있고 상임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같은 방에서 있었던 그 시절도 있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법재판소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이따 질의에 하기로 하고,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어떤 철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역사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선시대 때 국가가 만든 정부가 만든 법전, 4대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 법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경국대전 그 정도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법을 전공한 분들도 조선시대 4대 법전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국대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경국대전이 있고 영조대 속대전이 있고 또 정조대 대전통편 그리고 고종대 대전회통, 이게 4대 법전이라고 합니다.

경국대전에서 속대전이 나오는 과정이 376년, 영조가 376년 만에 법전을 개편했습니다. 그 뒤에 정조가 39년 만에 다시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왜 정조가 그 앞의 영조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전을 40년도 안 돼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전을 다시 편찬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종전 법전이 갖고 있는 뭔가 문제점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김준혁 위원** 예,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비록 앞선 왕이 만들었던 법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87년 헌법 체제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개정 움직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도 87년 헌법 이후에 지금까지 헌법에 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깊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기초로 해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김준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과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그냥 소박하게 생각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많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력구조, 모습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은 다양하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권리 같은 것들은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헌법전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전문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지요?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4·19 민주 항거를 계승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우리가 도모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뉴라이트 세력들, 극우·친일 세력들이 발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헌법전문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전문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있지요. 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최소 5·18 민주정신, 5·18 항거, 5·18 시민 항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여기에 더 나아가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이

2025년 4월 16일 날 발의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학 정신과 5·18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헌법전문에 넣자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저는 헌법전문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어떤 체계적인 관점이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취지를 듣고 보니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들어 있는 3·1 운동 4·19 민주이념의 연장선에서 그와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역사적 사건 정도는 국민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헌법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동학 정신에 대해서는 좀 송구합니다만 잘 모르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민주이념과 성격을 공통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서 헌법전문에 두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현재소장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대법관 마치시고, 아마 2024년 12월이지요? 마치시고 제주도의 제주대 가셔서 교수로 지내시다가 임명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범수 위원** 제주대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랑 법원에서 근무 인연이 있었던……

○**서범수 위원** 그때 부장판사 때 한 인연……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근무 인연이 있었던 교수님이 권유해서……

○**서범수 위원**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보통 대법관으로 마치시고 나가면 아마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게 상례인데 대학교수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들을 보면 탄핵 정국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기이기도 하고 또 혹시 저는 생각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예상해서 별문제 없는 대학교수로 간 것 아니냐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난 대법관 청문회에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지는 사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재소장후보 지명 당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 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게는

큰 영예다'.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을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영예스러운 일이고 또 영예로운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 의구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계기가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판결, 무죄 의견을 내신 것으로 해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인연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때 재판부 판결을 요약해 보면 'TV 토론회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은 결정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서법수 위원** 물론 대법원 판결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도 7 대 5 정도로 팽팽하게 나뉘져 있고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어, 거짓말을 해도 되나?'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납득 못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 판결로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 생명을 한 번 구하셨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현재소장으로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현재에 여러 가지 상정될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치적인 생명을 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だ라고 하는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종전 대법원 판결에 제가 담았던 생각은 그 사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나온 거라는 점을 위원님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공직선거법 때 후보자가 무죄 의견을 안 냈으면 현재소장으로 지명을 하셨겠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얹혀 있는 것 같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한다는 형소법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또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사하기 위해서 안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가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하고 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입법으로 위인설관을 넘어서 위인설법까지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후보자님,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법수 위원** 늘상 그런 의식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재판에 방탄용 인사를 기용한다, 즉 ‘자판기 인사다’라는 세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소장후보자로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후보자께서 만약 소장이 되면 누르면 원하는 물품이 나오는 자판기마냥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심입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진심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지명받은 부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지명받았다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혹시 동의가 돼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런 어떤 불신을 완전히 배제시켜 주셔야 정말 우리 헌법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저의 판단과 처신 여하에 따라서 그동안 재판소가 쌓은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늘 의식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시에 변호사들 했던 분을 정부 요직에 임명한 경우입니다. 법제처장도 했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임명을 하셨고, 특히 민정수석실에 보면 전부 다 깔아 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용산 민정포럼’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든지 자기가 변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던 변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이야기냐, 옳은 일이냐. 후보자님의 간단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사실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소장 지명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과 같은 견해도 있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 그런 견해도 많다는 점을 한번 상기드리면서요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정말 모든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도 그 밤에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물론입니다.

○**박지혜 위원**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떠한 법적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소추인 측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통치행위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역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혜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권의 심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권력자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재판권의 한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분명한 입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 드리는 판결문에, 결정문에 있는 내용에 동의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될까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12·3 비상계엄 이후에 4월 4일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저희 겨울과 봄에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혹시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낙 계엄선포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나, 사실 극렬히 대립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심한 대립 상황에서 재판관 한 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 내면서, 공정성을 갖추면서 재판을 이끌어 나간 그런 것들 여부를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하에서.

○**박지혜 위원** 절차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됐는가를 유심히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박지혜 위원** 그런 점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심, 의구심을 떨쳐 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특히 신경 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헌법재판 과정을 따라가면서 봤을 때 초반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하여서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결심을 한 다음에 한 달 이상 재판 결과를 내놓지 않고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불신을 초래하게 됐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헌정질서를 위누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다 보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내란죄와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형이 최종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사면·복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고 관련해서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헌법상 위헌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발의가 돼서 이제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면권은 별다른 제한 없이 대통령에게 지금 헌법상 유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대단히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률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정하게 되면 위헌성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발언에서도 강조하신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해서 사실 대법관이—대법관 생활을 해보셨으니까요—정치적 판결을 자행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고 있다 이런 비판, 올봄에도 굉장히 거셌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결심하고 9일 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2심 판결을 뒤집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법과 법관의 양심이 아닌 개인적인 이념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현실 진단과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당시에 법관사회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전국법관회의까지 소집될 정도로 비판이 많은 판결이었잖아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 판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서도 법정의 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입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뭐랄까 제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과거 대법관도 하셨고 이제 헌법재판관도 되시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우재준 위원 본인이 느꼈을 때 두 가지 임명절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아홉 분은 지명 경로가 세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세 분은 국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대법관에 필요한 어떤 것하고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먼저 추리면 그다음에 대법원장님께서 먼저 제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와 대통령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먼저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대통령 모두 동의를 얻는,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티오가 있습니다. 사실상 티오가 있어서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회나 대통령, 대통령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은 조금 다르게 했다고 보시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공부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뭔가 헌법재판이 헌법 자체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으니 삼권분립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혹은 대통령, 대법원장, 각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국가 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3명을 모아 놓으면,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우재준 위원 못지않게 아마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많이 존중한다는 취지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정치적 사법기관의 특성을 조금은 이해, 반영해서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반대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정당 가입하지 말고, 헌법재판관은……

○우재준 위원 얼마 전에 본인과 경쟁하셨던 후보군에서 나왔던 이름 중에 이재명 대

통령의 변호인이 언급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변호인이 혹시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리고 반대로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해서 특정 학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에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늘 들고 있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계속 제가 법원에 있으면서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조금은 거둬 주셨으면……

○**우재준 위원** 어쨌거나 대법원하고 당장 숫자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숫자에서도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이 13명이지요. 13명 중에 지금 두 분이 학회 출신인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9명 중에 4명이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렇게 구성 비율에서도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런 점에 있어서 하여간 편향성의 우려……

○**우재준 위원** 그런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입법 작용이나 이런 부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조금 정치적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정치적 사법기관에 담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여간 재판관들이 그동안 꾸준히……

○**우재준 위원**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도에 대해서, 오늘 임명권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사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정확하게, 하여간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늘……

○**우재준 위원** 아니, 왜냐하면 마음먹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음 누군가 대통령이 정말 너무 자기만 원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는 구조 아닙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건 대통령이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

○**우재준 위원**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대법관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지요? 정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게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취약하다 하지만……

○**우재준 위원** 제도상으로는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것을 너무 부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시면……

○**우재준 위원** 그러면 최근에 4심제 논의가 나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저는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우리가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재판소원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4심제로 작동되는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런 정치적 사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있지만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재준 위원** 그래도요 제도상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지금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수십 년, 수백 년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정치인이 자기의 재판에 대해서 연관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변호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물론 대신에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취약한 구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관 구성 방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제도적 장점도 존재하는 것 있고요. 다만 위원님……

○**우재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소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4심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한 사람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공정하게 했다고 인식하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재판에 여러 가지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면 피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건태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문 중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빨리.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이게 법원의 확장해석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면, 재해석을 하면 검사의 검찰 독재가 벌어지

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사법이 정치화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후보자님이 모두 인사말씀을 하실 때 ‘저는 우리 사회의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후보자님의 이 말씀이 저는 같은 취지라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같은 취지입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하더라도 그 피고인은 대법원을 믿고 자신의 인권을 대법원이 지켜 주리라고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10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2일 만에 결심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권력 견제를 한 반면에 대법원은 대통령에 종속돼서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르는 지침판결, 대선 개입, 정치판결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대법원이 다양화되지 못 했다고 보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실래요?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중앙지법 초임은 이른바 법원 임관 서열 1위들이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대법관에 임명된 대법관들의 초임지를 분석해 봤더니 44.1%가 중앙지법 초임입니다. 특히 보수 정권,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23명 중에 13명, 56.5%가 중앙지법 초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계를 보면 얼마나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하는지, 엘리트 위주로 대법원을 구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10명의 대법관들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2심 판결을 깨트리고 정치판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심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대법원의 선례에 충실하게 판결했습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본인들의 선례에도 반하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대법관들이 임관 서열 1등들만 모아 놓은 집합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먼저 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건태 위원** 그리고 대법원이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대통령에 종속되는 이런 판결을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판소원도 필요

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들 법조 영역에서는 정말 아주,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판소원에 관한 이슈가 정책문제로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판소원 도입의 장단점 같은 것들을 좀 더 멀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건태 위원** 임관 성적 1등이 재판 실력도 1등인가, 임관 성적 1등이 사법권 독립의지도 1등인가, 오히려 해바라기 판결을 제조하는 그런 판사들 아닌가, 또 영혼 없는 법 기술자들 아닌가, 또 지침에 순응하는 그런 순응 판사들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임관 성적과 각 대법관과 재판관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연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즉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법리에 위낙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서 좀 귀를 열고 고민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혹여나 조금 취약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 역시도 임관 성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겪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김상환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후보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단 현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여전히 싸늘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긍정적 시선도 있고 또 비판적 시선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저는 신뢰가 회복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존경하는 일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하신 것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법적 판결에서 그럴 소지가 보여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차등되어 있다. 인권이 소득에 따라서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신 이유를 저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실효화를 위해서 그런 모임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맞습니다.

○**최혁진 위원**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2024년에 별건 구속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하는 판결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기준에는 해당 사건 구속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별건 구속자는 제외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 중이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 확정되어 수감 중인 피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것도 인권적 조치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 이후에도 좀 찾아보니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도 하셨더라고요. 도급계약 형태로 일하던 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을 때 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종속성을 인정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결도 하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판결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제 위헌결정 관련돼서도 양성평등 신장시킨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 판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호주제 위헌결정은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고요.

○**최혁진 위원** 관여하지는 않으셨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오래전의 결정이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서면답변드렸습니다.

○**최혁진 위원** 서면답변에서 하신 거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최혁진 위원** 여하간 호주제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자녀에게 종속적 지위를 부여한 대표적인 성차별 제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권적 관점에서 명확한 본인의 소신을 보여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후보자님의 과거 재판 내역을 보니까 일관되게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판결을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신 흔적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중심의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신이 곳곳의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판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개인적 흠결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합리적 이유하고 사정을 헌법과 법률에 비춰서 논쟁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신장하는 해석과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혁진 위원** 다만 하나,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임하시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내란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장기화될 때 굉장히 우려가 많

았습니다. 경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표방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진보·보수, 좌우를 떠나서 헌법적 가치에 맞는 판결을 내려 주셔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늘리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후보자님의 역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간단히 부연 말씀 드리자면 오래 재판하다 보면, 저는 초창기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 것이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소박하게 가진 게 있는데 조금 더 재판을 하고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그 절차를 통해서 향후 이루어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취지가 그런 점에 있다고 생각돼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국민들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절차적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재판관님들과 상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그런 우려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모두발언 중에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설론 중립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대립·갈등에 있어서 관여하면 정치적 편향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권력의 사유화·남용,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세력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정치세력이 대립할 때는 막연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 주고 국가가 민주공화정으로서의 기본질서들을 빠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도 장기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어 가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 늘 의식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종국적인 것은 진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사안에 맞게끔 신속하게 판단하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우선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18 민주 묘역이 위치한 광주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께서 5·18 사건에 대한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인 9차 개헌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역사가 대한민국 민주화 항쟁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모두발언 중에 인상 깊었던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표현이실까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자체가 84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아주 선명하게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행 헌법 이전에 그해 1월에 우리 대학 동기의 죽음, 6·10 항쟁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이기는 합니다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헌법 수호를 위한 실천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최근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히 한번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번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것은 5·18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의에 저항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 주변에 시민들이 둘러쌌다. 총을 막았다. 그 사람인들 무섭지 않았겠느냐. 5·18 정신이 있었기에, 87년 민주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후보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문 대행님의 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나 한편 아직도 끝없이 5·18 민주화운동을 펼쳐하고 진상을 왜곡하는 사람과 세력이 존재합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 후보자님 들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못 들어 봤습니다.

○**정준호 위원** 못 들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정준호 위원** 작년에 꽤 이슈가 됐었던 언론사인데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소행이라는 가짜뉴스를 올해 초까지 퍼뜨려 왔습니다. 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의 5·18 왜곡·허위·폄훼 보도가 2년간 무려 23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교육위 리박스콜 청문회에서는 리박스콜이 작성한 전두환 명예회복연구회 계획서와 5·18 왜곡 시도 문건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건이 헌법전문에 올라갈 정도로 헌법 수호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평

가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응하는 어떠한 특별한 헌법적 방안을 생각한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아주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 깊이 고민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80년 이후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5·18의 진실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점과 표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정성으로 또 꾸준히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단기간 내에 동일한 어떤 관점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조금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왜곡을 시도하는 이런 부분에 언론의 자유가 과연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한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다른 표현의 자유보다는 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또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재의 수준은 좀 더 뒤로 미루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가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수호적 사건에 대한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소장 취임 이후에도 고민해 주시길 제가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4·19와 연장선상에 있는 공통적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정준호 위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신 바 있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정준호 위원** 헌법전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명시되는 게 헌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전문이 갖고 있는 정신이 그 이하의 모든 헌법 규정의 해석에 배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전문이 갖고 있는 규범력은 좀 약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가 문자로 확인되었다라는 점에서의 의미도 클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의 모든 헌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헌법전문,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 헌법은 주어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이 우리 헌법의 주어입니다.

이러한 대한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그 어떠한 소요도 없이 민주화 항쟁을 이루

어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게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정준호 위원** 그래서 현대사 사건 중에 5·18 사건이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적 가치를 전적으로 수호하면서 그 어떠한 소요도 없이 주먹밥으로 상징되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나 그 어떤 소요도 없이 불의에 항거했던 이 현대사적인 사건이 헌법전문에 수록이 되었을 때 최근에 있었던 빛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18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명백한 결실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정준호 위원**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이러한 헌법전문 수록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5·18 정신의 헌법화가 갖는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하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시간 너무 칼같이 잘 지켜 주셔서 저희가 오전에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까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혹시 후보자님,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데도 시간을 위해서 줄이신 거라면 조금 더 답변 충실하게 해 주셔도 좋겠고요.

계속 이 기조로 이어 가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어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여기자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라 어쨌든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에 참조하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유영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그런데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후보자 판결을 좀 살펴봤어요. 그중에 보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편향성도 두드러진 판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이 있었고요. 과연 후보자가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 2007년 3월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줬던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지난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아마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30대 중반의 음악교사가 17살의 여고생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유인한 다음에 강간한 계획적이고 악랄한 성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사회적 판단력조차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도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말이지요,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위계와 위력을 사용했던 사건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중사유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해자랑 금전적으로 합의했다’ 이 이유를 들어서 형량을 재판장이 갖고 있는 작량감경 형량형을 2분의 1로 감경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에 계신 어떤 청문 위원도 후보자의 이 판결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건에서 내린 저의 판단이 당사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이 판결이 당사자가 간절히 원했던 판결이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물론 후보자의 이 판결 이후에 2009년도 대법원에서 양형 근거규정이 마련됐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볼까요?

2011년도에 40대 교사가 여자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고요, 대법원은 2012년도에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계와 강압이 있는 경우 성범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해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대법관 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관이 선언한 정의는 법정에서 마주한 당사자를 향한 구체적 정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이 성폭행 판결이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 당시……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판사의 재량은 법관의 양심이 살아 있을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현저히 어긋나는 법관의 재량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봅니다. 물론 이 판결 외에도 만취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에도 후보자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PPT 좀 띄워 보실까요?

제가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 내역을 보면서 일용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2001년도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캡투자로 해서 현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해서 그 인근의 재건축 단지들을 체계적으로 매수해서 매매한, 그래서 현재는 실거래가가 55억에 달하는 메이플자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재수익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꽤 많이 될 겁니다.

주목할 점은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캡투자할 수 있고요. 집을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강남 재건축 신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건데요. 투자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부동산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가 구입했던 반포주공은 구매 당시에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 거 알고 계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때 후보자는 제주도 근무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인, 장모님께 2억 원을 빌려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저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물론 그다음에 전세를 다니면서 또 팔아서 6억 5000 정도 양도차익을 남기셨어요.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후보자가 매수한 아파트가 전부 반포역 반경 500m 이내입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후보자가 제주도 발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포역 인근 500m 부근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집이 지방에 있으면 모르지만 인근에 본인 있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도 캡투자를 계속 이어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캡투자를 이용해서 재건축 단지만 찾아다녀서 재산을 충실했습니다.

과연 이런 후보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에서, 후보자 세례명이 이보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맞지요? 이보는 후보자도 잘 알다시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이들의 변호인이라고 불렸던 성인입니다.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후보자가 이 성인의 길을 본받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법관후보 청문회 때 대법관이 지닐 덕목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취약계층이나 구호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기부금은 대한적십자회비와 국가 보훈처에 대한 2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후보자의 앞선 판결과 현실적인 삶의 궤적을 보면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오후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간략히 답변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말씀 하여간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판결은, 종전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인지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상승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 인정하고요. 그 당시에 나름의 여러 가지,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됐던 그 당시의 양형기준에 충실했던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아파트 취득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딱 들어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하나하나의 행동이냐에 대해서는 또 역시 겸허하게 들을 수밖에 없고요. 굳이 변명 하나 하자면 마지막, 좀 구차합니다마는 재건축 아파트를 다 알고서 재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재건축돼서 시세차익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오늘 이렇게 헌법재판소장후보 청문회를 하면서 자료를 고민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전 상황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87 헌법체제가 30주년이 됐던 게 2017년입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위를 꾸려서 여야를 총 막론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도 특위 위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요.

어쩌면 지금 후보께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87년 헌법이 40주년이 되는 2027년에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장으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대적인 변화를 헌법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굉장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후보자께 저희가 그 질의를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구체적인 어떤 것을 담느냐 또 개정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그런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구체화하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어쩌면 헌법상의 기본권의 변화도 굉장히, 지금 몇십 년이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장으로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멀리,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권에 대한 변화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생각이,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지.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헌법재판소를 떠난 지가 한 15년 돼서 모릅니다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 보면 기본권과 관련돼서 다양한 다른 나라의 기본권, 사실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축적한 논의 혹은 수많은 결정에서 했던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맞습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동 문제나 장애인 문제나 또 사회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계속 국제인권법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발현될 수 있으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헌법의 이념이랄까 기본권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저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가지는 어떤 생각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제인권법학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다양성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인권 문제나 누구나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성과를 내 가고 있는 재판 판사가 아니고 검사가 아닌 변호사들도 아니면 학자들도 저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저는 그분들은 일정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치 안에서 청문회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기존의 재판관들만 선별하는 이런 단점도 있지만 저는 후보자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위원님의 그 말씀에 기본적으로 적극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1기의 재판관님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 보면 그 당시에 현실정치에 몸담았던 분들, 요즘 말로 하면 여야의 정치인들이 들어오셔서 1기 재판부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셨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헌법재판소 초창기의 논증의 풍성함이랄까 생각의 다양함을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법원 출신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입법부에서도, 추천해서 하는 쪽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기후위기, 지금 엄청난 폭우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엄청난 재산적 피해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 있는데 사실 환경권에 대한 문제도 헌법이나 이런 데는 명시돼 있지 않은데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24년에 이 부분에 관해 '환경권'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혐오 또 소수자에 대한 지나친 어떤 박해 이런 것들이 거의 만연화되는 그런 우려, 물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실제로 난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비쿠폰을 아마 오늘부터 내일부터 지급하는데 또 역시 예전처럼 난민한테 이 쿠폰을 주는 게 맞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93년도인가요 아니구나, 2020년도에 이 난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금의 수혜 대상으로 난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당연히 난민도 포함돼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난민도 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납부하는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위, 일반 외국인의 지위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유념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칼같이 7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운영해 주신 위원님들께는 송구합니다. 저는 30초 정도 마이크 없는 채로 진행이 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진행 불찰로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기는 했는데 형평성에 비추어서 위원님들 향후 질의에 연속성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기회들을 조금씩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조배숙 위원님이십니다.

질의 이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지요. 어떤 한쪽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이 구성 원리를 보니까 헌법재판관이 9명입니다. 9명인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골고루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권력 간에 상호 견제가 작동되도록 이런 분산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헌법적인 균형을 도모하려는 87년도 제정 헌법의 그 당시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구성이 좀 편향돼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돼 있고 또 진보 우위 구도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상 보면요 현재의 결정이 자신을 추천한 진영의 이념의 대리인으로서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래서 그 쟁점에 있어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상당히 결론이 아주 일치합니다. 뭐라고 그럴까, 아주 단결이 될 정도로 이런 정도까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또 법원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배당되면 당사자들이 제일 민감한 게 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차베스 정권이 2004년도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했어요. 그때 가지고 친정부 인사를 다수 임명했고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은 붕괴됐고 정상적인 판단 대신에 정권 옹호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쇠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법적인 정의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대법관 재직 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동참해서 보은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니까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재판을 도왔던 분들이 다들 지금 국회의원도 되시고 또 중요한 공직에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후보님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소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존의 정형식 재판관이 연수원 17기, 조한창 재판관은 18기, 김형두 재판관은 19기예요.

지금 후보자는 20기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완전히 세 기를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 판단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미 2018년 12월 달에 보니까 대법관 되시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비판했고 또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헌재소장으로 지명이 되셨어요.

일반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소장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이 되셨어요. 헌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영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법관보다도 위상이 높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도표를 작성했을 때는 보니까 재건축 정보를 어떻게 아셨는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때마다 대박이 나셨어요, 두 번 다. 그리고 처음에 주공아파트 매입을 했을 때 처가에서 2억 4000 융통을 했다. 유영하 위원님 질의서를 보니까 거기에 장인, 장모로부터 빌렸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떻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것은 송금 자료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송금 자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빌렸으니까 이자 주셨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런 것 다 송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자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갚으셨고?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어떻게, 그래서 재산 형성을 어느 정도 좀 하셨네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희가 처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위원님,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딱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 정보를 알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재건축 아파트는 그 주변 일대가 다 재건축된다는 게 공지의 사실이여 가지고……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녹원한신아파트가 메이플자이아파트로 됐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가 50억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후보자는, 평범한 국민은 말이지요 강남에 뜰뜰한 아파트 한 채 있는 게 소원이에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후보자께서는 캡투자의 달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리고 또 보니까 주민등록 이전하는 게 제가 어저께 그것 보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주민등록을 이렇게 저렇게 이전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저 아파트 하나 사면 그냥 계속 거기서 20년 30년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이재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1분 더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삼권분립이 맞습니까, 삼권분립?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삼권분립이 아주 흔들리고 있어요. 뭐냐? 지금 입법권을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면서, 지난 5월 1일 날 그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관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하겠다, 청문회에 세우겠다, 그리고 재판절차 중지법 하겠다, 대법관 증원하겠다.

사실 사법부로서는 대법관 증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30명 증원, 100명 증원하겠다,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원을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겠다, 공판절차 중지를 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꺽소리도 못 하고 완전히,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누워 버렸어요. 입법부가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좀 구차하기는 합니다만 재건축 정보와 관련해서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포자이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는 파는 게, 그걸 왜 파냐라고 했었는데도 그 당시 여러 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녹원한신아파트를 샀고요. 한 5년간 거주했는데, 저희들이 그 녹원한신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 녹원한신아파트가 재건

축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고 사실상 그 일대의 재건축에서 녹원한신아파트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5년 거주 후에 갑작스럽게 서울시가 결정해 가지고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상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는 됐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좀 구차하지만 변명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 잘 유념하겠습니다.

판사들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워낙 판사들이 재판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 법관들은 법관들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도 사법부 수장을 그렇게 흔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양당 간사님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우선 현재소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보은 인사가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에 대해서 법원의 평판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법리에 해박하다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까지 하셨고요.

모두발언 1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법의 정치화는 저는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사법의 정치화는 이미 진행됐다.

한 30년 넘게 법관으로 근무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장동혁 위원 언제부터 이 법원의 정치화가 국민들께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것이 국민들께 큰 우려가 되면서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이제 중요 정치사건이나 영장사건에 있어서 특정 연구회 소속의 법관인지를, 그게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국민들께서 그렇게 우려하면서 보게 된 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정확한 시점은……

○장동혁 위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법농단 이후에.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2024년 2월 이전 2년 7개월 했으니까 2022년 정도에……

○장동혁 위원 2021년 5월 8일부터 하셨습니다. 2년 7개월이면 보통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하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 하셨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장동혁 위원 저는 그래도 후보자는 적어도 대법관 그리고 길게 2년 6개월 넘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법원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지 못한, 그것이 심화되는 데 있어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지명된 이 시점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여러 우려를 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장동혁 위원** 현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구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구성 원리가……

○**장동혁 위원** 구성 원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다수당에서 나왔다면 적어도 2명 그러면 5명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성상 그렇게 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적어도 1명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이 된다면 결국 6명을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헌사건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또 위헌사건에 있어서 위헌을 막고자 한다면 또 대통령의 권한이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맡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제가 서면질의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동혁 위원** 법원도 사실상 4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재심에 의해서 재판을 바로 잡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의 핵심은 기판력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법의 안정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재심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결국은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맡긴다면 저는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재판소원 인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서 예정하지 않고 있던 독창적인 결정 주문, 한정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면서 그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법관의,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다른 판결 결론을 내기 시작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에 예정하지 않고 있던 한정위헌이라는 독창적인 주문을 만들어 내면서 생긴 것이고요. 지금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이미 재판소원을 인정한 적이 있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대법관이 몇 명입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대법원장 포함해서 열네 분……

○**장동혁 위원** 14명입니다. 그러면 30명으로 증원이 되게 되면 16명을 더 증원하게 되

지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5년 안에 대법원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몇 명이 되냐면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14 대 16이 됩니다.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법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몇 명으로 늘릴지 그리고 그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지금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더 소외될 것이고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금 재판소원의 문제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개헌의 문제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한 재판 중지 문제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 증원 문제 그리고 사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30명, 뭐 100명 증원에 대한 안도 있습니다마는 이 30명 증원이 지금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만 답변드리는 건데요. 대법관 수의 증원에 대해서 저는 법원에 있으면서, 특히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생각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심급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뭔가 좀 더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인 확대랄까 질적인 확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대법관 수도 그런 식의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김명수 대법원장님 계실 때도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것들도 4명 증원해서 2개 재판부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된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동혁 위원 예.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현재의 구성 원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것은 귀담아듣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헌·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37년 동안 현법재판소가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이후에는 임명권자로부터의 의사에 자유롭게 해서 한 분 한 분들의 재판관들께서 쌓아 온 37년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보자면 현법재판소가 무슨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임명 이후에 헌법 해석의 전문기관으로서의 나름의 실력이랄까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한 열 번째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상환 후보자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고 듣 생각은 가장 성실하고 꼼꼼하게 답변을 해 주셨다 싶습니다.

물론 그런데 진보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안 보였어요. 특히 현재 발의

돼서 심의 중인 그런 법안이나 또는 현재에서 지금 계속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거의 회피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게 그동안의 나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걸려 있는 재판에 대해서 다른 헌법들 그런 것 때문에……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기존의 관행처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재판을 그동안 하시면서 법관으로서 지내 오시면서 가졌던 생각 우선 좀 말씀드리고, 이 답변을 회피하신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디 출신이냐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테니까? 안 미치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 제기가 될까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게 저희들의 고민거리인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정치에 계속해서,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공격일 텐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법관들이 모여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대법원장이 임명했느냐 국회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판결에 영향을 받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방금 전에……

○**민형배 위원** 마찬가지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대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무슨 청탁 보상, 보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재판을 하면서 이후에 일어날 그런 예상을 하면서 재판을 합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지 않다고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법원에 계신 분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이 늘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헌재소장후보자를 참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조 그런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그게 무엇이든 간에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법원의 태도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자세가 저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답변을 회피하신 부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저것 한번 보시지요. 계속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PT 좀 올려 주세요.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면)

대법관 퇴임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권 강조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임명동의 요청서에서도 기본권을 계속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기본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뜻으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12월입니다. 초등교사노조의 정 모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백승아 당시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민주당에 인재로 영입됐다, 그래서 환영 논평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 밑에 보시면 벌금 50만 원 선고받고 정직됐습니다. 이것 국민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하여간 서면답변의 취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더 구체……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회피하셨던 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답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법률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기본권이 맞닥뜨릴 때에……

○**민형배 위원** 물론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젊을 때는 정치적 기본권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이 정치적 기본권이 왜 지금 이렇게 금지되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선이 뭔지 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공무원이 그냥 스스로 법대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이런 사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제 와 고민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갖고 있는 덕목이 아주 가볍게 여겨질 수는 없겠다라는……

○**민형배 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에 공직선거법 개정돼서 투표권이 18세로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2022년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은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교사는 그게 다 제한되어 있어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기본권을 제한한 결과거든요. 침해한 결과거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어쨌든 위원님 말씀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는 면은 많이

있습니다만.....

○민형배 위원 해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 표를 보시면, 저기 봐 보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쪽 있는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만 유일하게 정치적 기부행위를 못 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에도 위반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교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정치단체에 대해서의 포괄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령 아주 조금씩 단계 변경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 교사의 활동 같은 것들을, 굳이 지금의 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답변을, 그렇게 출발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지요. 기본권을 중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정치적 중립성의 덕목도 이 사회에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행사의 내용을 좀 더 국회에서 예시해 나가는 방식으로.....

○민형배 위원 이게 군사독재의 유산 아닙니까?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소극적으로 하시면.....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위원장 이재정 잘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의 솔직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여러모로, 저희들이 법관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걸 단호하게 저희들이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도 조심하고 밖에서도 좀 저희들의 예를 들자면 진정성을 인정하는 쪽에 접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꾸 평행선이 되어서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지만 저도 짧게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또 오찬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오전에는 짧게 줄이고 저도 보충질의 때 조금 더 길게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판결 또는 이곳에서의 답변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의 답변들을 보면 표현의 자유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선거 관련 법 사건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어떤 소수자를 혐오하는 방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최근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형사처벌화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굉장히 방점을 찍은 사건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 언급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보은인사 등등의 말씀들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후보자는 선거법 관련한 사건들 가운데는 지금 진보정당 그리고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정당, 야당의 정치인 관련 사건도 많이 다뤄 본 적 있으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정** 그리고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후보자는 다른 권리들보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은 결과들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이 자리에서 밝히자면 저만 하더라도 변호사 시절에 표현의 자유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고, 제가 변호한 의뢰인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여러 정당의 정치인들도 많이 변호했고 또 보수 언론사의 기자들도 언론인들도 많이 변호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소한 2건 이상이 후보자로부터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 건들에서도 후보자는 정말 어떤 것보다 말할 자유에 대해서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재판을 해 온 것 같다는 경험적인 저의 소회를 또 엿어 봅니다.

헌법재판이라고 했을 때 소위 헌법학개론, 헌법 기본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기능을 소수자 보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정** 심지어 또 소수자 보호를 위한 우리 헌법적 장치를 얘기할 때 거꾸로 헌법재판소를 들기도 합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정** 그런 의미에서 저는 때때로 법감정이라든지 시기상조론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만큼은 그런 다수결에 부합해 보이는 법감정, 국민 일반의 감정이라든지 시기상조라는 그런 방식의 회피보다는 때때로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균형추를 맞추기 위한 무게중심을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라도 달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장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헌법의 논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그런 적극적 태도는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다수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제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정될 수 있는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보완적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고, 물론 헌법재판제도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안에서 소위 진보, 소위 좌파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그 소수의 권리에 집중한다면 저는 그 비율이 넓어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오남 중심의 임명보다는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법관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재판소 인선 구성에 많은 요구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그것은 이념이나 특정 정당의 편향된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정**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님 시간 맞춰 가지고 간결하게 전달하실 말씀들 다 요약해서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후에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 어떻게 점심은 드셨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김준혁 위원** 또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식사도 거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법제사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헌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48년에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기초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를 제정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것이 1948년 6월 23일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최종 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17표가 나왔고요, 고려공화국이 1표가 나왔고, 조선공화국이 2표가 나왔고, 한국이 1표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왜 굳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꺼내느냐? 헌법기초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고 헌법기초위원회를 어쨌든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갖고 소장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앞서 제가 첫 질의 할 때 조선시대 4대 법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이 네 법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름에 ‘대’ 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대’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헌법이라고 할까요? ‘헌’이라고 하는 것도 법 헌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인데 왜 굳이 두 단어를 합쳐서 헌법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의미, 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허장성세의 의미가 아니라 포용의 의미, 아우름의 의미가 아닐까? 백성들 전체가 고통 없이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대’ 자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법 헌(憲)자가 아니라 깨달을 헌, 깨우침 헌, 가르칠 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을 통해서 함께 아우르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기에 더해서 인류공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에 헌법을 만든 분들이 3·1운동 계승하고 4월 혁명 계승하고 남북의 화해·협력 계승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를 창달하고 그리고 인류의 문화,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좀 더 큰 의미 속에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소장님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신 것이 아주 잘한 일이었다. 오히려 이른 나이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목으로다가 법을 해석하고 공부한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이 기능 속에서 앞으로 더 큰, 국제법 그리고 세계화로 나가는 길에 대한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하여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굉장히 뭐랄까 저의 입장에서는 전율이 일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임감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전문을 다시 한번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저는 왜 헌법전문을 계속 강조하느냐면 헌법전문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정말 오랜 고심 끝에 만들어졌고 더군다나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5·18이 갖고 있는 정신을 여기에 꼭 담아야 된다.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던 이 5·18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헌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소장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법관 생활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판결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담겨져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과연 실생활에 그 정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도 말한 캡투자를 통한 아니면 재건축 투자를 통한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지난번에 지적됐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외에도, 아드님 로스쿨 들어가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법수 위원** 그러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3200만 원 정도. 그러면서 그것을, 보통 1년에 한 1700만 원 정도 로스쿨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하고, 나머지 하나은행에 있던 기준 금융부채 1800만 원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학자금 대출은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대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후보자님,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 안에 들어가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법수 위원** 그런데 학자금도 사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에 쓰는데 굳이 이렇게 대한민국 1%의 자녀가 이것을 쓰면 정말 어려운 사람, 학생들이 못 쓸 수 있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솔 김종한 장학재단’이라고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난 청문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올려 줘 보세요, PPT.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서 네 차례에 걸쳐서 한 1073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또 근로장학금까지 중복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솔 김종한 장학재단이라는 게 밑에도 보시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갖기 어려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데 과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느냐. 자녀분이, 특히 따님이 이런 생각이거든요. 따님이 받아서, 다른 분들도 다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이 장학재단을, 못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난번 청문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 하여간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서법수 위원** 저도 좀 불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세심하게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래서 늘상 약자를 생각한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내실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재산적인 이득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득관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생활에도 같은, 후보자께서 판결문에 그렇게 쓰실 만큼 실생활에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좀 해 주시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불편한 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속과 겉이 다르면, 특히 후보자께서 헌법소장으로 임명이 되면 헌법소장으로

서 역할을 하실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뢰라든지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늘 그 생각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리고 따님이 지금 ‘법무법인 여는’에서 근무 중이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법수 위원** 이 법무법인이 어떤 법무법인인가 아시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민노총 산하의 어떤 그것을 전담하는 법무법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거나 논의 중인, 노동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뤄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따님하고 후보자님하고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희 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이 만약에 대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충돌이 생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서법수 위원**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회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법수 위원** 당연히?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서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 지난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박지혜 위원** 지구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우리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극한 폭염, 극한 호우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도의 기상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새로운 헌법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동의합니다.

○**박지혜 위원** 이 새로운 헌법 현실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우리 헌법에 35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박지혜 위원** 하지만 아마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헌법 35조를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국가의 의무조항이다 이렇게 여기는 입장, 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 그리고 또는 구체적인 효력을 가진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아주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인식하기에는 좀 부족한 헌법 규정이 아닌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난번 기후변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낸 결정을 보면 종전의 입장보다는 이 35조의 의미를 좀 더 중하게 여기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지혜 위원** 맞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일군의 청소년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미온적인 기후정책 관련 법령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판결에서 저는 이 환경권의 어떤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인정의 기초하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과소보호 금지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송들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헌법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송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 세계적으로 2000여 건이 넘는 기후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환경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문제기도 하고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다 보니까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온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헌법 35조를 들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기후 소송들, 환경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들이 계속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소송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새로운 헌법 현실을 감안해서 저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위원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35조에 기초한 지난번 기후변화 사건의 결정을 기초로 해서 고민을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35조 협행 헌법 조문의 그 내용 때문에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든지 우리나라 헌법이 새로운 헌법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런 논의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환경권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권리성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 건강, 삶의 조건을 위협받지 않고 안정적인 기후하에서 살아갈 권리가 하나의 권리로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 보호를 명시해서 세대 간 정의,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 같은 시대적인 책임을 헌법전문이든 아니면 환경권 조항이든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들도 있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권과는 별도로 자연의 고유 권리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아주 깊이 있는 이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환경권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세대와 관련된 기본권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환경권이 다양한 이해관계하고 겹치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환경권의 취지, 지금 헌법 현실의 상황 같은 것을 좀 더 잘 살피면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새로운 헌법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요청하신 자료들 확인 중이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자료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필요하실 때면 질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질의하실 때 활용하시든지……

○**조배숙 위원** 아니요,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소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어저께인가요?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 지명 철회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제자 논문 표절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런데 제자 논문 표절은 대표적인 갑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보좌관 갑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부장관도 역시 이러한 사유로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제가 그건 또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가……

○**조배숙 위원** 그렇지만 지금 후보님이 여기 인사말에 보면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 누리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세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자기 측근으로 일하는 보좌관인데.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다음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법언이 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물론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속도감 있는 진행

이 필요하지요,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재판 지연이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당사자나 담당 변호사들은 아주 엄청난 고통을 호소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이자가 수백만 원씩 붙는 손해배상소송 같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지연은 막대한 손해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로운 판결을 향한 절차가 아니라 시간과 고통을 버텨 낸 자만이 살아남는 싸움이 되었고, 끝을 모르는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생계를 담보로 한 고통의 시간을 강요하는 잔혹한 인내의 게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성과와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인사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다가 판사들이 워라밸하겠다고 일주일에 3건 이상씩 안 쓰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상환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 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조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성과와 보상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격무에 시달려도 당사자를 위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력도 인정받고, 성실한 태도, 그래서 고등법원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아래 가지고 말은 ‘탈권위’ ‘평등’ 하지만 사실상은 사법부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후보자님, 그때 한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반대하셨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반대한 적 없었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와 관련돼서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반대한 적 없었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법원장 추천제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를 세우려면 사실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당사자 그리고 또 당사자를 돋는 변호인 이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실패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없고 그렇다면 같이 동의를 하셨다는 건데. 국민적으로는 이렇게 사법개혁이 실패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책임이 있는 분이 다시 또 다른 조직인 헌법재판소 소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또 일선 현장에서 그런 피해를 본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납득을 할까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하세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등 종전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맞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이 문제됐던 법관의 관료적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된 정책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어쨌든 그런 취지와 다소 방향을 달리해서 재판 지연이라는 커다란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도 법사위 나가면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간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시에 그 제도의 추진과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나름의 교훈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걸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소장도 역시 한 조직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철학이 없는데 현법재판소에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내시지 못하고 이런 분이 과연 현법재판소에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만 좀 해 주세요.

잠원동 동아에서 잠원동 반포로 다시 녹원한신아파트로 옮기셨는데, 같은 마을에 오래 살 것이 특별히 비판할 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만약에 잠원동 동아에서 지금까지 사시더라도 녹원한신에서 사신 것과 부동산 가격이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녹원한신아파트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 20년 된 아파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신 4지구 재건축이 시행되던 중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녹원한신아파트까지 같이 재건축하는 게 맞겠다라고 권유해 가지고 갑자기 재건축이 된 거지 않습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결국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이런 것 때문에 녹원한신에 들어갔던 건 아니시잖아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자,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

다음, 이정섭 검사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현재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지요.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는 현재가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과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법조인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너무 온정주의 판단 아니냐,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주고 안 주고를 검찰이 결정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수사·재판 관련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을 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다음에 기록을 현재에서 요구하면 제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법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해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소송법적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다음 그림 좀 보여 주실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공무원들의 과면이 2023년도에 여든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에는 과면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검사가 1억 정도의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검사징계법에는 과면제도가 없으니까 과면을 못 해요. 그래서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또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서 탄핵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1억 사기를 쳤어도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검사에 대해서 과면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같은 취지로 그 자료가 확정판결 전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좀 받아서 탄핵심판 취지에 맞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1억 사기를 쳤어도 직무상 비위가 아니니까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합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구체적인 그 내용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상

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지 몰라 가지고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자님,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끝났어도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사법권으로 본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최혁진 위원 재판소원, 4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법원과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면)

가장 결정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택 씨와 최은순 사건. 최은순은 김건희의 모친이지요. 이 두 분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아시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잘 모르는 입장인데요.

○최혁진 위원 두 분이 공동의 경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최은순 씨가 이익을 독식을 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강요죄라고 정대택 씨를 고발해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문제가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당시 윤 모 판사라고 한때 대법관후보에까지 올랐던 저명하신 분이지요. 왼쪽에 있는 게 원래 본문입니다, 계약서의. 그다음에 오른쪽이 최은순 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자기가 약정서에 찍은 도장을 다 지워 가지고 자기는 강요에 의해서 지분을 나누겠다라고 이 문서를 보기는 했으나 상대의 압박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재판부가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도장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최은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대택 씨를 그 자리에서 무고죄로 법정구속을 해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판부가, 당시의 법무사였던 백 모 씨가 지난번 1심에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 양심선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은순 씨가 이 법무사에게 2억 원을 줬습니다. 돈을 주고 위증을 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 증거 채택을 거부를 하고요. 이 백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형사처벌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이게 당시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이를 육안으로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더 황당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이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 윤 모 판사의 부인 및 가족과 김충식이 금전 거래를 합니다, 이후에. 윤 모 판사 집안에서 쪼개기로 총 23억 원을 김충식에게 입금을 합니다. 재판 거래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줬을까? 알고 보니까 광주 송정동에 2만 7000평의 그린벨트 땅을 김충식과 윤 모 판사 부인이 공동명의로 매입을 합니다. 여기 그린벨트 땅인데요. 당연히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군부대는 이전 결정이 나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을 재판 거래가 아니고 뭐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대택 씨는 이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자신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검찰 측과 재판부의 야합에 의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이 사건 이후에 대법 판결까지 끝나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겠으나 억울하게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절차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이론적 장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가능성 확장시키는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정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현실적 약점 같은, 단점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어서 결국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최혁진 위원** 제가 4심 도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들을 보니까 재판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을 1분만 좀……

○**위원장 이재정** 예, 각 한 번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한 20초,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국민의 재산의 손실을 줄이고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으로 확정이 되시면 이러한 문제 이런 부당한 문제, 권력까지 개입돼서 억울하게 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그런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PPT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자님, 주가조작 시세조종 범죄 잘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잘……

○**정준호 위원** 관련된 판결도 많이 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경제부 재판을 해서 그런 사건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귀한 사건이어 가지고요. 아니, 드문 사건 이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정준호 위원** 주로 경제범죄, 추가조작 같은 사건에서는 후보자님이 선고했던 형량은 어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사건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추가조작 범죄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준호 위원** 거의 다 실형을 선고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사건 자체가 지금 떠오르진 않았지만 하여간 좀 중하게 처벌해야 될 범죄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습니까? 자본시장법 사건 처리 현황 PPT 보면요 접수 대비 구속 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다음, 강도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속 비율이 20%나 높습니다. 이건 통계니까 부인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범죄가 어떤 부분에서 반헌법적인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결국은 우리 사회는 자유시장경제이지 않습니까? 각자가 공정하게 속임이 없이 시장의 공정성을 믿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객관적 공정성 자체를 훼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과잉금지 위반 침해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범죄의 중대성이 여부가 구속 여부의 결정의 한 요소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범죄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준호 위원** 다음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 관련된 주요 검사들이 탄핵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정준호 위원** 다음.

관련해서 마지막 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저런 내용 나오면서 ‘PC 기록 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런 결정문 보신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결정문은 직접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결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적정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다소 의문이 있

다', 결정문에 이 정도를 쓴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수사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가 된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결정문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가조작 범죄, 시세조종범의 공범으로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건데 당연히 이 부분 철저하게 수사해서 필요하다면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것은 지금 이 결정문 내용에서만 보는 저의 즉각적인 생각이고 판단이고요. 제가 사실관계 자체를 충분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즉답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접수가 되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인용되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낮은 비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이 문제되는 대표적 사례인 것 같은데, 헌법소원이 제도적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헌법적 관점에서의 다른 제도적 대안 제시가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는 것 말씀드리고요.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원인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불기소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도 재정신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은 답변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이런 제도하에서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갖고 있는 역할을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저 스스로도 유념하겠습니다고 또 재판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PPT 화면 좀 띄워 줄까요.

위원장님, 좀 멈춰 주세요.

지금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돌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1건입니다. 이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안만 13건에 달합니다. 우리 헌법 65조 1호에 따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탄핵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이

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보는 것처럼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내용이 잘못돼서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하는 그런 촌극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헌법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증거가 없고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그사이 국가의 행정은 멈췄고 정책은 표류했고 그 피해의 끽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헌법 65조 1항은 후보자께서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나 헌법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됐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치환시켜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여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 학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탄핵소추가 되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입장인데 또 소추하는 국회의 입장과 제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탄핵심판권을 이관하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본 적 있지요?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인용한 사유 중에는 향후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안도 탄핵 사유로 인용했고요. 그 탄핵심판 인용결정문에 보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같은 아주 모호한 정치적 표현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탄핵심판권을 대법원으로 이전하자는 건 아마 현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이런 결정을 하면 당연히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저는 힘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마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 재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올 6월 기준으로 보니까 헌법재판소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718일입니다, 올해만. 법정 처리기간 180일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다음 PPT 화면 볼까요?

미제 건수입니다. 장기미제 현황을 보시면 2년 이상 미제가 2021년도에 282건에서 올

6월 현재 414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후보자께서 알다시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기미제 사건으로 사건을 방치하고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고 있지요.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다음 화면 볼까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 후보자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면 스스로 정치적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던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말이지요 통과 과정도 비민주적이었고 내용적으로 위헌성이 매우 커던 법안입니다. 위헌 판단 여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법안을 3년 동안 그냥 끊겠습니다. 뭉갠 이유가 당시에 헌법재판관 다수가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이 들어서고 나서야 7 대 2로 위헌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가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서 헌법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여론 눈치 보기와 권력에 아부하면 현재는 존속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명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명심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도 기본권에 관한 마무리가 덜 돼서 다시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본권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30년이 넘도록 헌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더욱이 기본권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해서 그 내용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5항에 보면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인권기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다른, 꼭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발달장애나 정신적 장애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공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후보자님께서도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이 점 위원님 문제의식과 비슷한 걸 갖고 있었습니

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건 저희가 합의를 이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늘 개헌에서 뒤로 밀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에 대한 것들을 논쟁하다 보면 기본권이 좀 밀려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장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더라도 기본권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보장을 하고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이미 모두발언에서도 결정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언어를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탄핵·파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 졌고 헌법재판소의 6월 4일 결정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로 정말 헌법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게 됐고 또 그 결정문의 표현 양식·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딱 그 결정문만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기본권이나 민주주의적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교육적 의미,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지만 그런 교육적 의미 시민교육의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봐서 이런 언어를 조금 더 일반이 가깝게 느껴지고 또 문장도 좀 정제되고 너무 어렵게 쓰는 이런 방식들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의 어떤 재판관님이나 연구관님의 노력에만 기댈 게 아니라 별도의 언어 전문학자나 그런 걸 통해서 한 번쯤 걸러 보는 것, 저는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배제를 한다고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약간의 시스템적인 변화를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실까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아주 깊게 공감하고요. 임명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님이나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떤지도 확인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후보자님께서 너무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셔서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조금 전의 난민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런 게 아쉽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때 그런 결정문이 나와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 늘 외국인이나 난민을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에서 그게 공론화되고 이러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데 이번에도 역시 소비쿠폰 관련해서 난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 세금 도둑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도 주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사면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 79조에 적시되어 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우재준 위원** 혹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그 목적이나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에는 사면권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사면권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면에서의 관점에서 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재준 위원** 일정 부분 사법부의 한계라든지, 두 번째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있다고 봐야겠지요, 사면권이.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우재준 위원** 혹시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뭐랄까, 기존에 힘들게 했던 법원의 재판을……

○**우재준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정 범죄, 특히 내란죄를 이야기하지요. 이런 범죄들은 사면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입법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헌법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사유별 제한 같은 것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입법자가 제한의 사유를 만드는 것은……

○**우재준 위원** 그래도 헌법 가치에는, 사면권이 있는 목적에는 부합하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국회에서 하는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보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사면이 애초에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입법이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본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게 가능합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상적인 질문에 추상적인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본인 범죄를 직접 사면하는 경우도 가능합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 역시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둈 것이 아니라 일반론으로 본다 한다면 선뜻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우재준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과거 이화영 부지사가 확정판결이 나서 지금 징역 복역 중이시지요.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혹시나 현재 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

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아까 일반론 말씀드린 걸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개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이야기하는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우재준 위원** 혹시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논의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이나 중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우리 헌법상에서 그렇지 않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재준 위원** 그런데 최근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현재 법은 그렇지만 그 법을 바꾸면 된다’ 이런 말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우월식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는, 우원식 의장님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한 걸 보면요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는 생각이 어때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이 주장과 의장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즉답하기 어렵더라도 헌법 정신에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 연임 제한이 개헌되는 부분은 지금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취지로 당시에 명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아무래도 개헌의 어떤 순수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갔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반대로 그것을 어기고 현행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연임을 하려고 하면 그 순수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런 시각 자체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재준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방금 말씀드린 그 답변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우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여쭤보면요 지금 저희 헌법은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정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 조항, 연임 조항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이 만든 헌법적 결단은 어떤 경우에도 개헌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과거 역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픈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장기 집권에 대한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연임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그 조항마저도 없애고, 결국은 헌법에 대한 조항을 없애 버리고 개정하면 그 조항은 없어졌으니까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전에 국민들이 세웠던 그 헌법적 결단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제가 우원식 의장님의 저 말씀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종전의 헌법 규정에 대한 수정의 의미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행 헌법에서 그 조항을 없애 버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이전에 헌법적 결단을 했던 분들의 헌법상 기본권 그것이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 의하면 바꿔 놨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 조항 사라져 버렸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은 적어도 그 조항을 두었을 때는 그 조항이 헌법 역사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그다음에도 적용이 될 것을 전제로 그 당시의 국민들은 그 헌법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싹 빼 버리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적용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 조항을 둔 그 헌법적 결단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며 그게 민주국가입니까? 그게 헌법을 둔 국가에서 가능한 상상입니까? 상상은 가능하지요.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는 그 조항 없애 버렸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원 30명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법관의 임기가 몇 년이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6년입니다.

○**장동혁 위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증원해서, 지금 14명인데 16명의 대법관을 어떤 한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한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16명의 임기가 거의 순차적으로 끝나서 결국은 대법관 구성이 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로 저는 빠져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와 대법관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30명을 한꺼번에 증원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과 관련해서 교사의 정치적 행위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냐,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교사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어디 집회에 나가서 나도 정치적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거나.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교사가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향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정치적인 선택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아직, 물론 투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온전히 교사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아니면 학교에서, 다른 정치적 활동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수업시간에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여과 없이 학생들에게 드러냄으로써 학생들에게 투표권이나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비춰서 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교량할 때 있어서는 저는 그 영역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후보자님, 자신을, 그러니까 후보자님을 언론이나 세속적으로 분류할 때 진보적 재판관 성향이라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민형배 위원 그냥 ‘예스, 노’만 하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게 많이 평가받고는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진보적이지 않으신데, 가령 조금 전에 장동혁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정도는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에 교사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적 중립의 문제하고 전혀 다르게, 그런데 교실 밖에서 교육현장과 다른 개인의 활동 과정에서는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그러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아닙니다. 장 위원님도 지금……

○민형배 위원 아, 된다고 하신 겁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장 위원님 말씀할 때……

○민형배 위원 그러면 오늘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네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교원 공무원의 정치적인 행위는 그것이 교육과정이거나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 그 밖의 개인적인 과정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제가 정치적 중립성의 덕목을 갖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민형배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법원에 국방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있는 것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1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2심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고했다고요. 1심·2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또 상고를 했어요. 조금 전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헌법전문의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소명에서 어긋납니다. 헌법 6조의 국제법 존중의 원칙 및 외국인 지위 보장에도 어긋납니다.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 보장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법 34조의 군인의 국제법 준수 의무에도 어긋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없다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이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권력과 시민들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1·2심의 일치된 판단에 대해서 다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국가가 상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상고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또 국가 입장에서는 상고할 자유는 있겠습니다만 1·2심의 일치된 판단이고 상고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결국 1·2심에서 주장했던 것의 반복이라고 한다면 좀 더 조속하게 확정시켜 가지고 국민들에게 조금 빨리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은 국가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사상의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상의 계엄령?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들어 보지……

○**민형배 위원** 어떤 법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까, 사상의 계엄령?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처음 들었을 때는, 국가보안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습니다. 그 사상의 계엄령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이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운영, 70년대 80년대 운영을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은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공정 가능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생각이나 관점에 대한 형사적 제압으로 기능됐던 면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몇 가지 반헌법적인 법률입니다. 사상과 말을 처벌합니다. 인권 보호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손발 노릇을 하던 수사기관이 이걸 악용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생명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정을 모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함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 모든 이가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자칫 그 사상에 혹은 생각의 자유에 극심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 정도는 재판 생활을 하면서 가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계엄 그리고 또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인 저 역시도 전 세계적인 관심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국민이 앞장섰고 무엇보다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을 의결한 장면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는 국내외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에게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해서 묻는 해외 의원들 그리고 국제기구의 관심들도 높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여러 다자 체제를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범례로 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베니스위원회도 있고요 또 지역협의체로 AACG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로서 기구를 총괄하고 또 헌법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헌법재판 제도가 우리만의 제도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이성과 그리고 또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라서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국제적 요구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준비되어지고 있거나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등 굳이 회의체 참가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장님,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사법외교와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 규정 자체가 폭넓기 때문에 보편적인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인권 가치를 우리 헌법 규정에 담아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적인 헌법재판의 사례와 정신, 재판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배울 것도 있고 저희들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교류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잘 살펴서 의미 있게 좀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특히 지금처럼 요구가 있습니다. 또 수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외교의 일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고, 기관의 필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사실 몇 가지 후보자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진보적 이슈에 대답하기를 굉장히 주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교사 같은 경우는요, 유럽에서 의원들 출신 직업군으로 가장 많은 게 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훈련을 일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정당을 거세한 채 정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법 교육이 결국 규정 교육일 따름이지 해외에서는 선거법 교육 자체가 정당을 전제로 하고 정책을 전제로 합니다. 그 선봉에서 있는 사람이 교사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유럽 의회에서는 교사의 정치 참여가, 우리는 법조인인 데 반해서 굉장히 가장 넓은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실 필요도 있고요.

교사 아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도, 심지어 군인조차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처럼 속성 자체를 군인에 두지 않고 시민에 두는 것이 유럽의 여러 사례들에 많습니다. 심지어 근무 기간에서조차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 잠시 쉬는 시간에 하는 활동에 있어 정치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자유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또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사회권을 구체화시킨다는 내용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껏 사회권이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새로운 권리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개정이 하는 것이지만 그 한계의 가장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력 역시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경계선을 치열하게 넘혀 가는 그 역할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항상 해야 되는 고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저 국회의 역할로 또 국민의 합의가 무르익으면이라고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기대해 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정** 이로써 보충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배분했던 처음 순서대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입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김준혁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 원래 질의 내용을 5·18과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사의 어떤 정치적인 기본권 이야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할까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루소 들어 보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김준혁 위원** 루소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제2의 탄생, 민주시민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민주시민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민주시민 핵심은 바로 뭐냐? 정치적 자유입니다. 이 정치적 자유를 우리가 지금 현재 헌법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런 거지요. 초중등 교사가 정치적 권한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들은 정치적 자유를 갖고 있지요. 특히 국립대학 교수들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수 출신인데 저도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업시간에도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기도 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혹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사립대 교사들도 있는데 왜 사립대 교수들은 자유롭고 국립대 교수들도 자유로운데 차등을 둘까.

이건 헌법적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가르치는 대상에서의 차별성을 좀 주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입장이요.

○**김준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꾸로 청소년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대학생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보다는 이 헌법적 평등권에 오히려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현재소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좀 혼동스러운 게 제가 정치적 중립성의 덕목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에서 떠오르는 장면과 또 정치적 기본권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상정하는 상황이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김준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평등권·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정치와 사상의 자유를 공동으로, 다만 사회적인 합리적 의견 존중 이런 것들이 좀 더 결합된 상태 속에서 헌법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에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혹시 1분을 더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재정** 예.

○**김준혁 위원** 이와 별도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었다, 1995년도 검찰 논리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김준혁 위원** 그래서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왜 헌법재판소가 이 의견을 내놓지 않았느냐? 당시 청구인들이 기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소를 하루 전날 취소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현재가 기간 문제로다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현재가 내란과 반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김준혁 위원** 만약에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김상환 후보자님께서 현재소장으로 있다고 한다면 5·18,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이재정** 예, 말씀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워낙 위원님들 말씀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못 드렸는데요.

저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그것이 시험에 어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런데 그 민주시민의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공론의 장에서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오해가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라는 의미에서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현실 정치의 문제가 그 경계선에서 넘나들고 이럴 경우에 어떨까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어릴 때부터 서로 다른 생각을 공존하고 토론하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의 교육을 저해하는 의미에서의 교사의 기본권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우려했던 상황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정**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 현안까지 포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재정**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범수 위원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윤호중 행안부장관 청문회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윤호중과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윤호중은 동일인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호중 후보자께서는 ‘생물학적으로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아서 ‘정신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니까 ‘정신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후보자님, 대법관으로서의 김상환과 헌법소장후보자로서의 김상환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동일성 있지요. 정신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동일성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대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마는 100%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서범수 위원 그것은 조금……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왜냐하면 제가 헌법재판소에 몸담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축적된 논리를……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오늘 재판소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법관 내지 대법관으로서 계실 때의 입장은 한결같이 ‘만약에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에는 3심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 봉괴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오늘 그리고 서면답변에서 보면 ‘이러이러이러한 점은 장점이고 이러이러한 점은 단점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입장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과연 내가 대법관으로서 갖고 있던 생각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돼서 가면 바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30년 법관 하면서 말했던 모든 견해는 해석론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이런 법 체계 내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국면은 정책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청문회를 준비해 가면서 더욱더 그렇긴 하는데요. 이론적인 것은 이게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라 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에 대해서는 정말 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입장은 입법 사항이라고 했던 반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그래서 이론적인 면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책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차제에, 어차피 이 논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재판이 뭔가 국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권리구제의 길이 있는데, 출발점 종착역에서의 논의

입니다. 지금 대법원으로 종착을 할 것인지 재판소로 종착을 할 것인지 문제인데 그 이론적 장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해석의 통일, 기본권 보장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위원장 이재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짧게 줄여 주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도 제정적인 판단은 후보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알력, 이해관계 이거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더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느냐 그 잣대에 의해서, 오직 그 잣대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똑같은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기 때문에 좀 장단점이 정밀하게 표현돼 가지고 결단해 주실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몇 차례 질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 이런 유의 그런 취지의 질의들이 좀 있었는데요. 후보자님 아시기에 그간 탄핵결정에서 기각된 결정이 많았지만 소수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반대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한덕수 탄핵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이 있었고요. 첫 번째 검사 탄핵사건에서도 인용의견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런 탄핵결정에서 단순히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탄핵심판청구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런 이유만으로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앞서 제 환경권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후보자님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보다도 후퇴한 입장을 제시하시려는 것 같아서 잠깐 놀랐었는데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면 당연히 진보 법관입니까?

그리고 앞서 우재준 위원님께서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비율이 높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 국제인권법을 활용해서, 국제인권법상의 기본권과 국내 헌법의 기본권들이 좀 관계가 있고 현재가 국제인권법을 헌법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국제인권법을 예를 들자면 정치적, 어떻게 분류해서 이렇게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인권법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배워서 개방적인 폭넓은 헌법 규정에

좀 더 반영하는 노력 같은 것들은 특히 헌법재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헌법소원 관련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정책론에 해당하는 영역도 있다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심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와 관련한 그런 통계를 받아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이 1421건, 훈시규정이지만 심리 기간 180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무려 70%의 사건이 이 180일을 초과했습니다. 3년간 심판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연평균 733일에서 길게는 809일까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헌법 27조에서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동떨어져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마무리발언 좀……

○**위원장 이재정** 예, 1분.

○**박지혜 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재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동안 큰 사건을 하느라, 저희들 큰 사건·일반적인 사건 분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적체돼 있는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연구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그런 입법적 제도적 개선점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를 해서 좀 더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방금 연구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원 79명도 채 다 충원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재준 위원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관련된 질문인데요 탄핵재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핵의 기준이 뭐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직무에 관한 헌법 및 법률 위배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라고……

○**우재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보다 직무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게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우재준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성격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지난겨울에 보면 탄핵 정국에 정말 수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우재준 위원**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재준 위원** 탄핵 가결 소추 이후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심리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다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탄핵 인용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 같은 것들이 나온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거리로 나와서 정치적인 여론이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계시지 않으신다고 봅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희망, 바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까지 생각해서 한 것은……

○**우재준 위원**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 그렇게까지 국민들께서 나오셔서 집회를 하는 경우는 흔히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탄핵심리에 있어서만 그렇게 국민들께서 많이 나오시는 것은 국민들께서 현재가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않고 다소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국민들께서는 기존의 헌법 법리에 따라서 정당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우재준 위원** 왜냐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당시에 인용 의견을 내신 분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추천인이 딱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천 그다음에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하신 분이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건에 있어서도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분이 또 민주당이 추천하신 정계선 재판관님이셨습니다.

너무 이런 진영 논리로 탄핵이 결정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헌법관에 기초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정** 예.

○**우재준 위원** 후보자님 생각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탄핵심리를 꼭 현재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대법원의 심리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는 현재에서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약간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인권을 중시하는 분들 이렇게 오시는 것은 괜찮은데 오히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재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법절차에 가까운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대법원에 넘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탄핵심판을 어떤 헌법기관에 맡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나름의 고유한 법률을 형성해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탄핵심판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법원으로 가야 된다 그 생각에는 선뜻 하여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이분이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를 하면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제가 오전 질문에서 했듯이 대법관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든지 재판소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대통령의 정적을 막 기소하면 결국은 그게 정치가 사법화되는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정치가 사법화되면 결국 근묵자혹이라고 사법부도 사법부가 정치화될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사법화의 원인이 된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없애야 된다, 이건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민 통제, 기소 시민 배심제도 또는 더 나아가서 중요 사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시민 배심까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했다고 해서, 이런 악의적인 기소일 경우에 검사가 기소했다고 해서 검사가 피고인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검사가 공범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예컨대 아까 야당 위원이 말씀하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는 거의 민사 소장 또는 민사사건의 준비서면에 준할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사법의 정치화를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것의 기실 상당 부분은 정치적 문제가 사법으로 온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고민하셔야 되고 사법의 영역에서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어찌 됐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검찰권이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리고 시민 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재판 단계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통해 가지고 검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후보자님,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최혁진 위원 제가 지난 내란 시기에 집회에 나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연배가 지긋하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군에 가 있는 자식에게 절대로 민간인을 마주할 때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라고 전화하는 내용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최혁진 위원 저는 헌법재판소가 똑바로 하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화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해산을 결정한 바 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최혁진 위원 당시의 해산 사유가 실제적 내란 행위보다는 내적 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여서 회합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사를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내란이라 했습니다. 정당해산심판 이후 헌정사 최초의 정당 강제해산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최혁진 위원 화면 좀 보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떠냐?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지요.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시던 분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각하될 것이다.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신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세 한번 외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지금 이런 사람이 다시 입당이 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사이에 국민의힘의 주요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발언들을 계속하셨어요. 여기 이를 대면 알 만한 분들, 얼굴 보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또 이 자리에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3월 1일 날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정답은 탄핵 기각이다,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현재소장으로 임명되시면 잣대를 정확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음모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과거의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를 대하였듯이 국민의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일반론적으로는 종전 통진당 사건에서 생긴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후보자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시간인데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봤던 내용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심리 종결이 2025년 2월 25일 날 됐고요. 심판 결정 선고가 4월 4일 날 됐었습니다. 한 달 넘게 평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 심판이 선고가 되는 거냐라고 궁금해했던 그 사안은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정준호 위원**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시면서 답답해하셨습니다. 이 상황도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정준호 위원** 문형배 전 재판소장직무대행이 퇴임 후 인터뷰에서 만장일치 평의를 이끌어내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을 잘 보았습니다. 심판관님들의 평의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 위낙에 이게 언제 심판이 되는지 알려 주지 않고 평의만 무작정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장후보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도 없으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심판을 지켜보셨을 건데 합리적으로 평의에 대한 절차를 존중을 하면서도 반면에 무작정 전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난번 탄핵심판은 굉장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그 비중에 맞춰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충분히 상의해서 가능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다면 그런 예측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후보자님께서 재판소장에 임명이 되신다라고 하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노력하겠습니다. 재판관들과 충분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그렇게 하십시오.

○柳榮夏 위원 방금 최혁진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동료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셨는데요. 저희가 상임위나 특위에서 질의를 할 때 같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법관으로 한 30년간 봉직하셨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그동안 혹시 판사로 계시면서 사형을 선고하신 적 있습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사형은 선고한 적 없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난 97년 12월에 우리가 23명의 사형수를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8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그런데 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 또는 범죄 발생에 대한 위화력 효과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더군다나 사형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도표를 보시면요, 작년 10월에 한 언론이 보도한 설문조사입니다. 직장인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6년도 이후에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데 대해서 97%가 부적절하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려 74%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과반 이상인 67%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대법관후보자 당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형제도가 현행법상 합헌이나 절대적 종신형을 둬야 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 기억하십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상 사형제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금……

○柳榮夏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여쭙습니다. 생각을 여쭙습니다.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재판소에 이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

서.....

○**柳榮夏 위원** 답변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나와서 제가 물겠습니다.

헌법 128조 2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갈리는데 이 규정을 둔 이유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헌정 사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중임이나 또 임기연장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를 막기 위한 국민적인 여망이 담긴 조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따라서 이 조항이 헌법 개정의 한계를 규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있지만 효력에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인적 효력에 제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1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柳榮夏 위원** 일부 언론 보도대로 이 조항을 개정해서 다시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뒀을 경우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생각으로서 그런 시도나 만약 그런 개정이 됐다면 그게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 개정 내용의 수혜 범위에 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안 시켜야 된다는 현행 헌법 자체를 개정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장님 말씀은.

○**柳榮夏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柳榮夏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다만 개정했을 때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런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이 사항을 들었거든요.

○**柳榮夏 위원**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 이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후보자님,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경과된 미제사건의 총수가 985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2년이 경과된 사건은 398건이고 5년 이상 경과된 사건도 16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어서 훨씬 더 숙고를 요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좀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원인이 주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위낙 양적으로 헌법소원이 많이 접수되는 문제에 따라서 저희 재판소의 대응능력이 그에 못미치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위낙 또 그사이에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즉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 그런 역량으로 투입되는 것들에 따른 한계인 것에 좀 원인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약간 분석을 바꿔 보면 지금 사건 처리기간 관점으로 보니까요 평균 719일이 걸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사건의 내용이 몇 가지로 헌법재판은 나뉘어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보면 처리기간이 이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180일이라는 기간에 비하면 거의 4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기대를 하게 하지 않게 차라리 현실감 있게 법을 바꾸든지, 180일의 기간을 바꾸든지 아니면 평균 사건 처리기간을 최소화하든지 이 둘 중의 하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사자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을 당연히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어쨌든 180일을 넘기는 방법보다는 위원님의 말하는 후자의 방법이 저희들이 마땅히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재판소의 연구역량과 판단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가령 선례가 존재하고 비교적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전원재판부를 통한 판단이 아닌 4명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요 이런 제도적 설계 같은 것들이 뒤따르면 효율적으로 장기 미제 재판 자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1분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정** 예.

○**조배숙 위원** 금방 존경하는 우리 최혁진 위원님께서 장동혁 위원님 탄핵기각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장동혁 위원님의 스피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번 5월 1일 날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대법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되기 전에 4월 말에 ‘대법원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자기 의견을 말하신 거예요. 미리 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정치인의 의사표현으로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위원이 탄핵기각 발언을 했다 이것은 탄핵심판 절차 중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학의 대가인 허영 교수도 절차상의 문제를 다 제기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그 반대되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정 일단 질의 진행하시고 판단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예.

○조배숙 위원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2018년 청문회 때 동성결혼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현재 호적법에 이성들 간의 결혼만 혼인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위헌 제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규범체계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우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답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24년도 7월 18일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동성커플에 대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거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 집단과 이성 동반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현 규범체계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하고 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여부라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돼서……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본질은 침해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것이 차별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런 취지의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

○조배숙 위원 그러나 굉장히 그게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그치지를 않아요. 이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법적 논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판결문을 봤습니다.

판결문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제가 항소심 판결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지금 해머라는 학자가 남성 동성애, 대개 성적 지향의 동성애를 봅시다. ‘그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사이언스에. 그런데 99년에 ‘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되어 있어요,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그래서 처음 이렇게 주장한 해머라는 사람하고 다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옆에 7번·8번·10번 염색체에 혹시 있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겨 보세요.

그다음 연구에도 결과적으로 7번·8번·10번 염색체에서도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소심 판결도 성적 지향이 타고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위원장 이재정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모르고 그렇게 한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과학적 연구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적 지향의 문제는 선택이나 극복이나 부정이나 긍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 항소심 판단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아니요, 타고난 거라 그랬어요.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이재정 다음 추가질의로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실까요, 아니면 신상발언이실까요?

의사진행발언?

○최혁진 위원 예, 겸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상임위나 이런 자리에

서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 한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충분히, 제가 무슨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비아냥을 거린 것도 아니고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유감이라고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인사청문하는 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계엄과 내란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울 건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조배숙 위원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께서는 당시에 3월 22일에도 ‘12·3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청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청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저는 사실 당사자가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하실 결로 생각되는데 다른 분께서 두 분 하셨으니까, 제가 최혁진 위원님 한 번 기회 드리고 또 다른 분께서 두 분 함께 하셨으니까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면 어떨까요?

○장동혁 위원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예, 그러면 1분만 하시지요. 길게 하실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우선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혁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6년간 교회를 다닌 신자입니다. 세이브코리아라는 집회는 기독교계에서 주관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역사의 굴곡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굴곡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밑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결국은 계엄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그 계엄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건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마무리하시지요.

○이건태 위원 저도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나온 발언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했고 다만 그 취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설명을 했고 다른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저는 당사자가 바로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최혁진 위원님께도, 저희가 당사자 설명을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온 것들은 국회의 관행이라고 해서 모두 존중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의 본질보다 청문위원 간의 지나친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나름 설계한 저희의 진행의 묘미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진행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양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통진당 해산 사건의 현재 결정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당원의 행위가 문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서 그 정당의 해산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활동들이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정당해산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후보자도 현재 결정문이고 당연한 법리이기 때문에 다른 이견은 없으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예전의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 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지극히 당연한 법리라고 생각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되고 확장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원칙이 천명되었지만 과연 이 판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이 원칙을 제시하면서 다섯 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무죄판결이 났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아까 제시한 이 법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주심을 맡았던 당시의 대법관은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아닙니다.

○**장동혁 위원**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노정희 대법관님이 주심이십니다.

○**장동혁 위원** 주심은 아니었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장동혁 위원** 어쨌든 여기에 관여했던 대법관 한 명이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무죄의견을 냈던 후보자께서 지금 현재재판소장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당연한 법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의견 따로 덧붙이실 것 있으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 역시 그 판결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건의 쟁점, 공직자 혐의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의 결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조금 속도를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헌법기관,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그러니까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 이런 정도만 해 주시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가능할 수 있다.

지귀연 판사 잘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고 윤석열을 석방했는데 이 행동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과 중립성, 103조 위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분 나름의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

○**민형배 위원** 위반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즉시항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헌법 12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빨리빨리 대답 안 해 주시면 시간이 갑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즉시항고 해서 좀 해석을 통일했으면 좋았겠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헌법 84조 소추에는 형사재판 전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일반론으로서는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의결로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헌법이 수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수도 이전 여부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종전 관습헌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치되는 문이어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4 대 4로 기각결정 했고 그러면 정족수 미달로 끝났지만 이것이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적법성을 확정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결정문을 정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2인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법원의 판단이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SNS에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허위·왜곡 정보를 유통했을 때 피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민사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좀 제재의 수준이 강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민형배 위원** 그런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그런 입법적 선택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민형배 위원** 도서정가제가요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동의하십니까? 정가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마무리하신 겁니까?

○**민형배 위원** 예.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만 한 가지만 짚어 볼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당해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여쭈셨는데요.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또 제가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관여했습니다.

당시에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베니스위원회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유럽의회 특히 우리가 계수한 헌법을 운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우리의 원류 격에 해당하는 독일의 헌법재판 사례, 1950년대 사례부터 치열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도 있었던 NPD 사건, 독일민족민주당 극우 정당입니다. 관련된 사례만 하더라도 4년 넘게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자제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정당, 이후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취지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물론 당시의 위헌결정, 그 해산 논리구조에 따른다면 당시 범죄 형사사건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일부 무죄가 나기

도 했는데요. 그 주요 범죄의 형사 피고인이 여전히 정당의 소속원이고 그리고 그들을 응당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뭐 제적을 한다든지 제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이 선을 긋지 않은 부분까지도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시감 있는 묘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 내지 못했던 국민의 힘에 대입해서 말하는 것도 저는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선출한 정당의 정치인들이 있는 그런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그 정치적 생명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께 맡기는 게 그리고 또 지난 탄핵 과정을 이끌어 온 것은 절대 식자충이나 국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 역할은 국민에 의해서 저는 리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위대한 국민께 맡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따르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대답,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자체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생각은 위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종전 통진당 해산 결정이 결론은 어떻든 구체적 적용은 어떻든 간에 제시한 법리 자체는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으로 제시된 법리 자체는.

결국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법치주의적 제한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경계해야 되고 겸여되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법관으로 재판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정 오후 청문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재추가질의를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데 재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추가질의는 위원님들 순서대로 모두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재추가질의는 김준혁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님.

재추가질의도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최근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 내용 들으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잘 모르시군요.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당혹해한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그만 두느냐 안 그만두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우리 한일관계가 새로 정립된, 그러니까 한일기본협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지난 과정에서 가장 한일관계를 제대로 맺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일본 전범기업들이 만들어 놨던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태평양전쟁 시기에 탄광에 강제동원돼서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좀 저도 사실 놀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자님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생탄광 사도광산 이런 현장을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잘 알고 계시군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영화도 보고 또 저희들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김준혁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가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좀 있었고요. 2012년에는 김능환 대법관이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갑작스럽게 대법원에서 냈던 판결들을 무시하고 제삼자 대위변제를 꺼내 들었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돈을 모금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여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대답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좀 평화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김준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만들었던 제삼자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취지에 아주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그것이 민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으로다가 정부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종의 친일적 행위라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싶어서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유족의 입장에서 혹은 또 생존해 계시는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입장에서 제삼자 변제가 마음에 안 들고 상처가 될 거라는 생

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삼자 변제가 저희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민법적으로는 제삼자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인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언급했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행위 규정 말씀.....

○서범수 위원 예, 허위사실유포 중에 행위 규정을 삭제하겠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확한 입장은 뭐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범수 위원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행위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넓다 그리고 사소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과장된 표현까지도 쳐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지난번 2021년도인가 그때 어떤 식으로 이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우리 유권자로 하여금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위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정말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우리 유권자로 하여금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어쨌든 이게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혹시 헌법재판소에 온다고 한다면 쌍방의 주장을 많이 들어서 해야 될.....

○서범수 위원 그리고 이게 절차적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빨리 급조된 법안이다.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과기환송이 되고, 5월 2일 날 발의를 하고, 5월 3·4·5·6 일 연휴고, 7일 날 제가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서 바로 상정해서 법안소위도 심사를 안하고 바로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법사위까지 통과하고 본회의 앞에 있다가 중지됐는데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급조된 사항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안의 내용의 정당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을 위한 어떤 특정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이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분명히 아마 위헌법률심사 청구가 될 거지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 쪽으로 갈 건데 거기에 대한, 물론 지금 절차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후보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간단하게 부연하자면 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실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되는 계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또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치주의 문제여 가지고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가 예민하게, 오래전에 제가 연구관일 때도 갑론을박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여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잘 따져 가지고 판단해야 될 그런 쟁점인 것은 맞다……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쟁점 사항으로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특정인이 끼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쟁점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 지난 3월 조사인데요 여러 권력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기관별 신뢰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자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후보자님이 만약에 재판소장이 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후보자님이 헌법재판소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한 질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장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재판소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오랜 기간에 나름의 신뢰를 획득한 것을 유지하고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데 제가 일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의 핵심은 그래도 부당한 영향 받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온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재판이 좀 더 그렇게, 종전에 해 왔던 것처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책임감 있게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정치적 중립성이나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을 당부하는 그런 질의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서 위원장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87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가 또 질의한 것처럼 헌법 현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헌법 현실에서 헌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리의 어떤 프런티어를 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해내고 권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재판 진행 굉장히 중요한데 또 소수자의 보호,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헌법 해석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기억에 남는 판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답변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당시에 답변하셨던 것은 장기간 근무한 은행 직원들이 저성과자로 분류된 경우에 사회봉사활동을……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사회봉사 명령, 예.

○**박지혜 위원**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판결을 했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박지혜 위원** 저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점에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감수성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꼭 그렇게 하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우재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의 대위변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혹은 채무는 직접적 변제가 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고 제삼자에 의한 변제는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민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제삼자에,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불법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어서……

○**우재준 위원**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맞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사실상 타국에 있는 이런 기업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국가

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피해자 보호에서 더 맞는 방향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제가 소개했던 그런 견해도……

○**우재준 위원** 기본권 침해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소 조금 아쉬운 답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상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국민인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겠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우재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이게 또 현실적인 면과 이념적인 면이 교착하는 그런 게 지금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인 거고, 또 북한의 이중적 지위로 생각……

○**우재준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적절하게, 그러면 어쨌거나 헌법상 우리의 주민이고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래서 탈북해서 들어올 경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헌법 취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국가가 아직까지, 지금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지요? 이런 부분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최근에 하여간 위원님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법 자체에 위원 뭘 결성하도록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뭔가……

○**우재준 위원** 문재인 정부 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우재준 위원**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재판에서 그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재준 위원**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게 이중적 지위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재준 위원** 아무리 이중적이라도 탈북해서 넘어온 사람에게도 그렇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넘어온 경위에 대해서 쌍방의 주장이 달라서 쟁점이 되고……

○**우재준 위원** 혹시 1분만 더 주실 수……

○**위원장 이재정** 아까 1분 쓰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그러면……

○**우재준 위원** 다음 질의 안 할 테니까 1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정**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지 않으시는 조건으로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후보자님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셨잖아요? 인권에 너무나도 관심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까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듭니다. 아무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인권침해가 아주 심각했던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타당한 해석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기본적으로는 그 원칙에 서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혹시 예외적 사정에 해당되는지를 갖고……

○**우재준 위원** 예외적 사정이 있을 게 뭐가 있지요, 도대체?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때 신문지상에 의하면 이렇게……

○**우재준 위원** 뭐가 있지요? 저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여기 까지 왔는데, 아무리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여기서 재판받으면 되는 거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요? 기본권 침해, 넘겨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이게 중대범죄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견해가 나눠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재준 위원** 사형수일지라도 여기서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왜 일본을 상대로 외교력을 행사해서 우리들의 피해구제 조치 위해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다면 방금 야당 위원님들이 정부가 대위변제한 것이 왜 문제냐, 그건 타당하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을 배상받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가 피해 국민들을 위해서 일본국을 상대로 정의를 실현해 달라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대위변제를 하고 ‘다 끝났다. 국가의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것에 반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현재의 결정에 바로 위반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그런 취지에서 제삼자 대위변제가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거에 의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좀 있고요.

○**이건태 위원** 최근에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위헌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창원지법은 합헌이다라는 취지로 해서 위헌심판 제청 청구를 기각했거든요.

또한 최근에 이 법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11건, 23년도에 23건, 24년도에 40건 기소가 됨으로써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법원이 이것을 위헌심판 제청을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근로자의,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위헌심판 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리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우리의 경영자하고 우리의 지식인들은 우리의 노동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산업현장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혁진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저는 질의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쭉 얘기를 들어 보고 확인을 해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중하고요.

다만 오전 주질의 때 제가 여쭤봤던 내용 중에 5·18 같은 사건은 헌법전문에도 수록이 돼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인데 이에 대한 왜곡이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지, 맞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헌법전문에도 수록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왜곡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갖는 헌법적 한계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후보자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뚜렷한 역사적 사실을, 그런 뚜렷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감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행법에 의해서도 몇 가지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표현의 자유가 비약적으로 또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단호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나쁜 의도 혹은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하려는 의도, 이런 의도하에서라고 한다면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제 생각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경계선에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다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스스로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고 빈약한 정보에 기초해서 스스로 확신이 들어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재보다는 알려 주고 설득하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준호 위원**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고의적인 것을 가지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시킨다는 측면이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행위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설시를 해 주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지금 위원님과 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저한테도 왔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단호할 부분의 영역 같은 것을 잘 경계선을 잘라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헌법 제128조 2항, 쉬는 시간에 조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柳榮夏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 두 번 파견 갔다 오셨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여느 법관님들보다는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하였고 규정 하나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은, 87년도 6·10 항쟁 때는 아마 후보자님께서 공부를 하시느라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28조 2항을 둔 취지는 이겁니다. 그동안 불행했던 우리 헌정의 원인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국민들의 여망이 이 조항에 담겨 있던 것이고 그 여망이,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들인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 제정 권력 주체들의 의지가 담긴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 조항은 헌법 개정은 할 수 있지만 인적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수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128조 2항을 개정하여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이다’ 이렇게 헌법 다수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128조 2항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드려서, 아마 오전에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추상적인 질문에 추상적으로 답변하면, 그러니까 공범에 대한 사면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추상적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당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화영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공범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것은 결국은 추상적인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대통령과 이화영이라는 분 사이에서의 공범 관계라는 것이……

○**柳榮夏 위원** 지금은 공범 관계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케이스를 넣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 공범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데 이 사면이 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님, A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柳榮夏 위원** 괜찮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B에 대한 공소장에서 A와 공모하여 확정됐다고 해 가지고 A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B에 대한 이 확정된 판결이 A에게 바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연하게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柳榮夏 위원**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후보자님, 보니까 법관 재직 시절에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셨어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하고 김어준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주진우 기자가 박지만 씨가 매형 신동욱 씨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5촌 조카 박용철 씨를 입막음하려고 살해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핵심적 가치다. 선거 국면에서 의사결정을 돋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뜻으로 맡겨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이렇게, 정도가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너무 폭넓게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조배숙 위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요새 가짜뉴스 아시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조배숙 위원 가짜뉴스의 폐해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것이 막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카톡파출소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언론의 자유 인정해야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팩트냐 아니냐 이 부분은 최소한 언론사의 경우에는 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면죄하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반론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사실 확인 의무를 외면했던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게 너무 폭넓게 인정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가짜뉴스, 이 왜곡된 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현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 사안에서의 표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주 명백한 허위가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니었던 사안에서의 판시 내용이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은 아주 뚜렷한 허위사실이 아주 의도를 갖고 막 전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정성의 가치가 표현의 자유를 상회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안에 있어서는 그 표현의 내용과 수준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주 명백한 가짜뉴스와의 등가치가 아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아까 제삼자 변제가 문제됐던 그 판결이요 언제 확정됐는지 아십니까? 2018년 10월 30일 날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삼

자 변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일본과 외교관계가 풀리면서 이것을 제삼자 변제로라도 풀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만 문제 삼지 않고 외교적 정치적 함의를 더해서 피해자들의 의사는 단순히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한 그런 배상금만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2018년 10월 30일부터 이 제삼자 변제가 문제되는 한 4년 가까이 그러면 그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외교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그냥 상징적인 판결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냥 휴지 조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오히려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판결의 주문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이 법률적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제삼자 변제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 결국은 개별 채권자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입니다.

왜? 특정 정치 영역에서 그 개별 채권자들의 의사를 본인들이 추정해서 마치 모든 채권자들의 의사가 이러한 제삼자 변제든 어떤 방식의 변제든 이런 방식의 변제는 원치 않고 국가가 나서서 일본과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이건 변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로 치환해서 마치 이런 제삼자 변제가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판결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제삼자 변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배상이 결국은 국제법적인 관계나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계속 해결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 날 확정판결이 났지만 그전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교적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건 풀리지 않고 그러면 일본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게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국가가 제대로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든 그 어떤 의미로든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비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것은 맞습니다. 판결의 이행으로 제삼자 변제하는 것과 직접 이행하는 것이 민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전제는요. 그 말씀, 그렇게 전제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후보자님, 지금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장기미제 사건이 늘고 있지요. 헌법재판관 이직이 심각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연구관들의 이직이요?

○민형배 위원 헌법연구관, 죄송합니다.

연구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재판에서 우리 헌법연구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미리 잘 조사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쟁점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직 현황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수준과도 관련되어서 그 현상 원인 같은 것을 잘 분석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

○민형배 위원 지난 5년 동안 19명 중에 80%가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조금 전에 헌법연구관이었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다양성 얘기를 여러 다른 분들도 하셨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현재 구성 현황입니다. 모두 서울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역대 헌법재판소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서울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정치학과 출신이 한 분 계시긴 한데 근래에 와서는 모두 법학과 출신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이상하지 않으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특히 대법관은 법관이 아니어도 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법관의 자격으로 그냥 법률 연동시켜 버려 가지고 이게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좀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사 중의 하나는 소장후보자님을 통해서 무슨 청탁인사 보은 인사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그동안 저의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 오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후에 내 이 판단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민형배 위원 생각을 못 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아까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민형배 위원 이유가 뭡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모두에도, 다른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19 민주 이념에 대한'을 헌법전문에 실는 그 정신이 사실 5·18을 헌법전문에 실는 것과 저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많은 희생, 그런 의미와 진실을 하려는 노

력들이 있었던 것 하나하고 그리고 45년 동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으로 실어서 그 정신을 헌법 해석에, 싣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형배 위원** 우리의 헌법적 가치 지향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그 일관된 정신이 민주주의의 원리랄지 주권 재민의 정신의 실천으로 4·19 민주 이념하고 5·18하고는 저는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한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변호인을 맡았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공교롭게 제가 후보자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을 변호하는 그 사건도 있었고 또 보수언론 언론인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저 역시도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달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 변호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에 초청되어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제가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큼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변호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5 촐 살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도 제가 변호인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미처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형제 간의 일입니다. 박근령 씨와 박지만 씨, 특히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와 박지만 씨가 오랜 갈등을 겪었고 또 육영재단의 폐권 다툼에 있어서 조직폭력배 200명이 동원되는 사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봐서 널리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신동욱 씨가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여러 차례 느낀 부분에 있어서 배후가 누구다라고 했던 사건, ‘박지만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라고 본인이 언급했던 그런 문제와 관련됩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증언을 하기로 했던 박용철 씨 관련된 녹취록이 있다고 했고 그 녹취의 녹음파일이 캐나다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변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했던 사건인데 어느 날 그분이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죽였다라고 추측되고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박용수라는 사촌지간입니다.

덩치도 박용철보다 작고 한 번도 칼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 차례, 소위 말하는 칼잡이들이 하는 기술로 사람을 난도질한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은 손에 상처 하나 입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시체에 대한 해부, 검시 내용까지 다 재판장에 현출되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만큼의 충분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라고 재판이 진행된 걸로 저는 리프하게 기억합니다. 맞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그 사안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그 관련된 내용에 충분한 취재를 거쳤고 또 그것이 의혹을 제기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폈던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그리고 제삼자 변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 가치 중립이라는 이유로 하셨지만 사실은 실제 판례나 법률의 규정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민법 469조에 나옵니다. 채무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경우 제삼자 채무 변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격적 측면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와 책임이라는 그 인격적인 측면을 분리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피해자가 수령에 동의했을 경우. 당연히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와 똑같겠지요, 구조가. 가해자의 위임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수령에 동의해 사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보험금 형태의 지급입니다. 그것은 이미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후의 법률관계가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기존의 판례에 나머지는 사실 불법행위에 기한 제삼자 변제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시고 기존의 판례를 존중하는 방식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셨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수적 견해로 알려진 견해에 거의 등가적 가치를 두면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은 기존의 보수적인 판례를 따르던 태도와는 좀 달라 보여서 저는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재정**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그 부분의 쟁점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쟁점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사건을 갖고 있고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헌법기관의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건의 쟁점만 말씀드렸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알겠습니다.

이로써 재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재추가질의가 필요하신 분, 총 세 분.

○**민형배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그러면 세 분.

그 전에 민형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정정할 게 있어서요.

지난 5년간 헌법재판관의 이직 비율이 8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중에 교수하고 판사로 이직한 경우가 80%라는 뜻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놀라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안 그래도 그 이직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쪽으로 가고 계셔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세 분 신청하셨는데요.

먼저 유영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모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동료 위원님들 질문 중에 ‘참여재판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로 유죄가 평결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하고 납득할 만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일치 평결은 존중돼야 된다’. 이 판례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후보자께서도 주심으로 계실 때 똑같은 비슷한 취지의 판례를 한 것 제가 읽어 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후보자가 2015년 9월 4일 날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했던 걸 겁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 공직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체 유죄판결이 나서 500만 원 선고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후보자께서 두 번의 명예훼손 중에 첫 번째 게 무죄라 하고 두 번째 공표사실은 유죄지만 선고유예 결정을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기억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한번 해명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두 번째 공표 사건에 왜 선고유예를 했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오류와 잘못을 반복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가 안 되는 게 징역, 10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 선고되면 양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표 사건의 선고유예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그대로 확정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연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 판결문만 갖고 판단했을 때는 후보자께서 분명히 기록을 보고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지만 기존 판례가 말했듯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라는 평결은 존중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무죄 취지에 대해서는 다른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치지만 양정에 있어서는 저는 후보자의 판단이 지금도 과연 적절했나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게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두 번째 의사표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한 것이 타당한 거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희들은 지금 지적한 그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봄에서는 두 번째 의사표시도 두 번째 표현도 무죄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의사 표현의 계기나 경위 같은 것에서는 대단히 참작할 점이 많다는 그 표현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양형으로 저희들끼리 모아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배숙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유영하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연 교육감 양형 이유에 ‘다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연 교육감 어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돼서 공수처에서 기소해 가지고 자격상실되는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때는 하여간 재판받았던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계속할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 당시의 진정성을 저희 재판부는 받아들였었던 겁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 당시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좀 맞지 않았다 이런……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앞부분에 있어서를 정말 강조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 재판부의 일치된 생각이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돼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출산·인구소멸 때문에, 일손 부족 문제 때문에 외국인 인력 유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다문화주의 수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톨레랑스 그래서 이민·난민 수용했

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가치관 충돌, 사회 갈등, 잣은 테러.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영국 총리, 사르코지, 메르켈 등이 부분에 대해서, 메르켈은 분명히 얘기 합니다. ‘독일이 추구해 온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온정적 인도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주의가 이런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생각 없이 그냥 온정적 인도주의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것 넘겨 주세요.

2021년도 8월 달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 학교 학생들이 7명인데 6명이 1명을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말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교장선생이. 왜 그러나 보니까 왕따당하는 1명은 어머니·아버지가 다 순수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문화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다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의 정체성, 공동체의 가치, 자국민 보호 관점에서 어떤 헌법적인 기준, 균형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저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했습니다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시선은 다소 차별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차별적이지 않는 그런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중심으로 계속 상황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거꾸로 역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쪽에서 길게 보고 또 외국의 사례도 보고 그러면서 좀 균형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 취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더 갖고 있는 소외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대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가 아껴 두었던 1분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왜 서울대, 50대, 남성. 오영준 후보자도 서울대, 50대, 남성. 청문회 내내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님에 대해서도 왜 현재소장은 매번 서울대 법대냐? 물론 다행히 후보자님께서는 50대를 살짝 넘기셨어요. 그래서 ‘서오남’에는 해당 안 돼요, ‘서육남’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출신 학교가 판결에 다양성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 학교 출신은 특정한 정치적인 견해나 아니면 판결에 있어서 어떤 법리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률적인,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런 비판에 의하면 절대 후보자가 되시지 못할 줄 알았는데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영장의 발부 기준, 특히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기준에 있어서 특검이 신청하는 영장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다르지 않습니다.

○**장동혁 위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달라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최근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을 보면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사유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특검은 시한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 영장 청구 사유가 늘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 사유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관련성이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특검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보다 더 영장 청구가 쉬워야 되고 영장 발부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추가 1분이 들어온 건데 제가 이렇게 다 썼나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들도 인권법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학술적인 목적으로 모여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들을 문제 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중요한 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들에서 결정들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 판사님들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에 일정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탄핵제도,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 즉시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예.

○**장동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정도의 사유라 하더라도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결이 되더라도 최종 현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직무정지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시나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헌법에 직무가 정지되도록 필요적으로 정지되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제도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개헌론까지 포함해서요?

○**장동혁 위원** 예.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경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서 직무정지를 집행정지하듯이 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정** 이상으로 두 번의 재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상환**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장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나름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헌법정신의 실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의 귀중한 말씀을 잊지 않고 부단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헌법이 살아 숨 쉬는 법으로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포용하며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이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 하셨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를 대변한 것임을 후보자께서는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의 임명동의안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임용이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 사항 유념하셔서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하루종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7월 2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개최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준혁 민형배 박지혜 서범수 우재준 유영하 이건태 이재정 장동혁 정준호
조배숙 진선미 최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유세환
전문위원 이은정

○출석 공직후보자

김상환